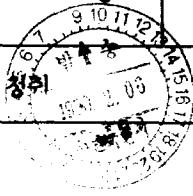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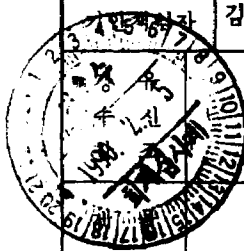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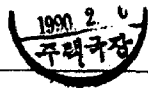
#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주개30321-141	(전화: 731-6392)	시행상 특별취급
보존기간	영구·준영구. 10.5.3.1.	시 장	
수신처 보존기간	10년		
시행일자	90.1..		
보조 기관	주책국장 전걸	협 조 기 관	해경과장 이상 보고및 협조통계관 법무담당관(공고인심사)심사필 회계과장 회계심사계장 개발계획계장 개발2계장
	주책개발과장		
	개발1계장		
개발계획과 계장	김종천 (박종성)		토검발 1990. 2. 06 공제관
각안참조		발신명의	시 장
도시계획안 공람공고 및 주민의견 청취			
(제 1 안) 내부결재			
1. 우리시관내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옥석3동2지구1개소의			
추가지정(시장방침 76호, 90.1.17)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고자			
2.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주민등 의견청취) 제2항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2(공청회및 주민의 의견청취등)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14일간 지정된 장소에서 (관할구청 주책과) 일반에게 공람			
하겠으며,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4조 2항(주거			
환경개선지구의 지정요건)에 의거 별첨동의서에 의한 충분한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재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공고안 참조(별첨)
나. 공고방법 : 일간신문 2회 게재 (2종의 일간지에 조건, 석간, 또는 1일 이상 시차를 두어 게재)
다. 공람장소 : 관할구청 주택과
마. 공고예산
1) 예산액 : 1,161,600원
2) 산출근거 : 3단 x 8cm x 22,000원 x 2개지 x 1.1 (부가세) = 1,161,600원
3) 예산과목 : (주택재개발비 특별회계), 일반재개발, 재개발사업, 사무비관리, 수송비및 수수료
4) 지출방법 : 공고후 한국방송광고공사 청구에 의거 지불
첨부 1. 공고안 1부
2. 도시계획안 및 입안예고용 도서 1부
3. 주거환경개선지구 동의서 양식 1부
4. 주거환경개선 사업시행안내 1부
(재 2 안) <i>st</i>
수신 공보관 <span style="margin-left: 150px;">결재</span> <span style="margin-left: 50px;">발신 과장</span> <span style="float: right;">61</span>

제목 도시계획안 신문공고 의뢰



1. 별첨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6항에 의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코자 일간신문에  
공고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안) 가, 나, 다, 라 이기시행

(제 3 안)

수신 동작구청장 , 도봉구청장

참조 주택과장

제목 도시계획안 공람공고및 주민의견 청취

1. 귀구관내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6조의 2항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2 제6항

규정에 의거 별첨 도시계획안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공람시키고자 공고하였음을

통보하니 도시계획입안지로 표기하여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에 철저를 기하고

2. 관계서류 사본을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지정된 장소(관할


구청 주택과)에서 공람시킬 것이며, 공고문 사본을 구청및 동사무소등의 게시판

에 게시토록 하고, 별첨 사업시행안내 내용을 당해지역 주민에게 홍보하여

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한 별첨동의서를 징취하여 '90.2.27 까지 기입

임수 보고할 것.

62

첨부 1. 공고문 사본 3부
2. 도시계획안 도서 공람용 도면(1:5,000) : 3부, 입안예고용도면 (1:3,000) : 1부
3. 동의서 양식 1부
4.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안내 1부.
(계 4 안)
수신 수신처참조
제목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입안내용 통보
1.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또는 공공시설의 정비상태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도시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을 개선코자 별첨과 같이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을 입안하여 공람중에 있음을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공고문 사본 1부
2. 도시계획입안 도서 1부. 끝.
수신처 대한주택공사사장, 서울시도시개발공사사장

63

22 심사 1990. 1. 31 제 3/ 조  
 심사자 박세환 법무담당관  
 (인) (인) (인)

1990. 2. 6  
 주택국장

공 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 21 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안 공람공고

1. 흑석3동2 주거환경개선지구의 1개지구의 추가지정에 따른 주민의견청취를 위해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제2항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안 내용을 일반에게 알리고자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관할구청 주택과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3. 도시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일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990. 2. 6

서울특별시 장

가. 공람기간 : 1990. 2. 7. - 1990. 2. 20. (14일간)

나. 공람내용

-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안)

연번	지구명	위치	면적(m <sup>2</sup> )	공람의견서 제출장소
1	흑석3동2	동작구 흑석3동 산79-2일대	6,530	동작구청 주택과
2	미아동 2	도봉구 미아동 791-1776일대	30,370	도봉구청 주택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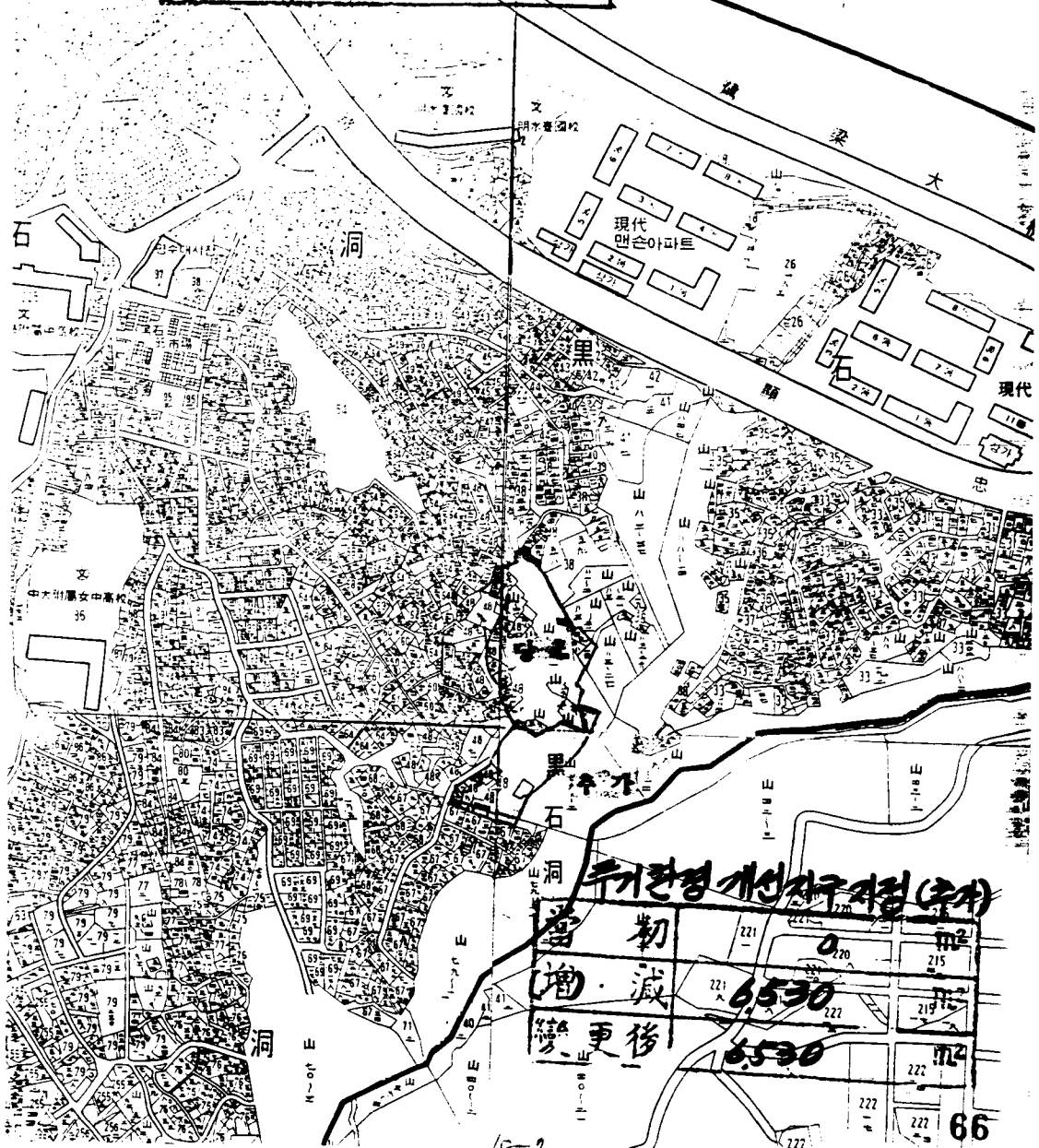
도시계획입안 및 입안 예고용 조서

○ 주거환경개선지구 신규지정 입안

지 구 명	위 치	면적(m <sup>2</sup> )	비 고
흑석3동2	동작구 흑석3동 산79-2일대	6,530	추가지정
미아동 2	도봉구 미아동791-1776일대	30,370	.

제3종2 住居환경지역

S = 1/5000



주거환경개선지구정(제1)  
 초·중·고  
 증·감  
 변·정  
 6530  
 6530  
 66

제3등지

S=1/3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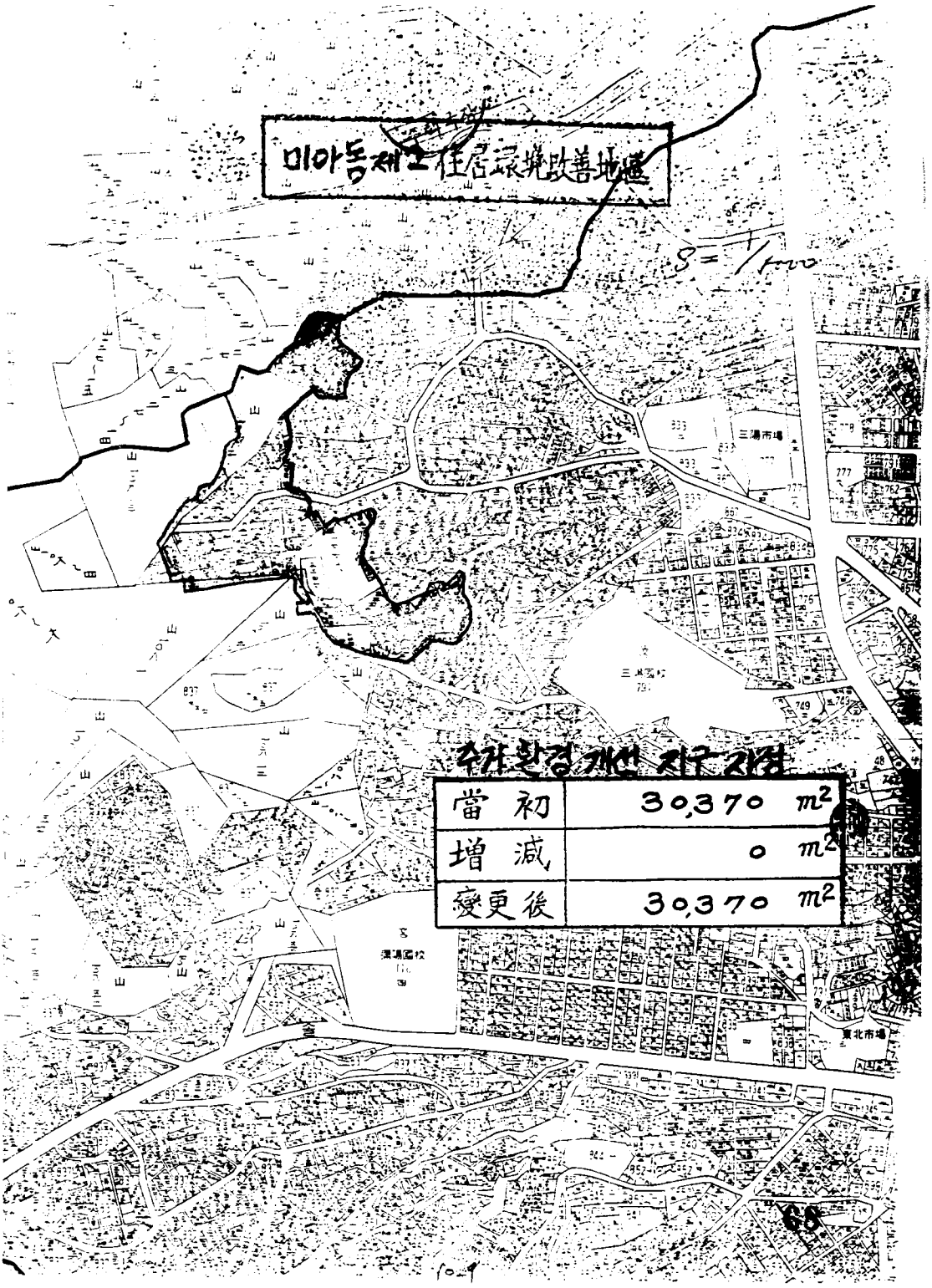
주변경계선지수변경안영

當	初	3.7	0	㎡
(增)	減		6,530	㎡
變更後			6,530	㎡



미아동제2 住居環境改善地遷

S = 1/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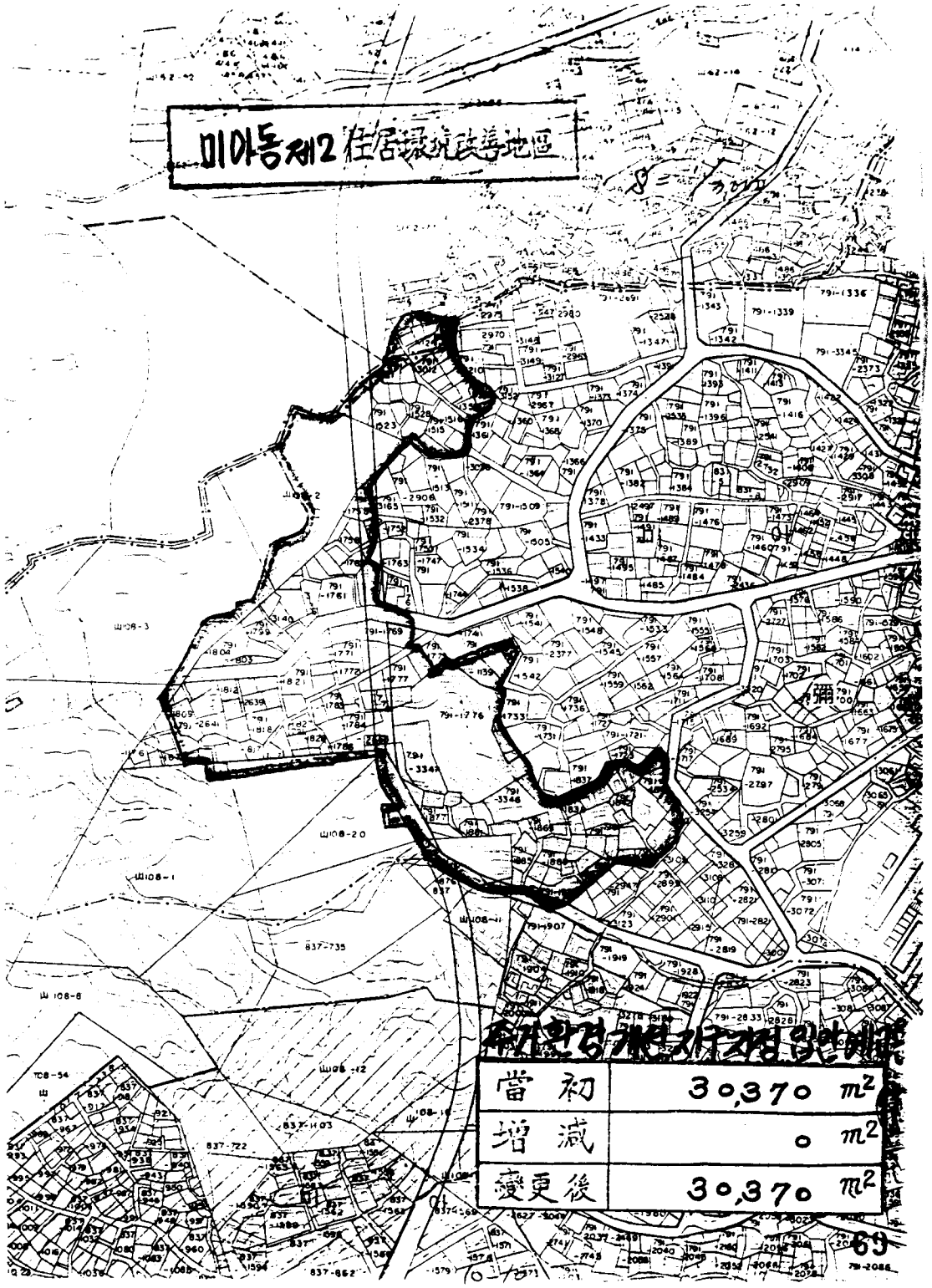
주거환경개선지구조사

當初	30,370 m <sup>2</sup>
増減	0 m <sup>2</sup>
變更後	30,370 m <sup>2</sup>

深溝國校

東北市場

미아동제2 住居環境改善地區



新設及増設面積

當初	30,370 m <sup>2</sup>
増減	0 m <sup>2</sup>
變更後	30,370 m <sup>2</sup>